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63

발의연월일: 2024. 6. 19.

발 의 자:유동수·진성준・박 정

임광현 · 김기표 · 박민규

정준호 · 최민희 · 복기왕

이용우 · 안도걸 · 윤준병

허종식 · 김교흥 · 안규백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음.

그러나, 적의 도발 및 위협 또는 민방위사태에 따른 국민이 입는 생명·신체·재산상 피해 등에 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최근북한이 살포한 전단 및 오물풍선 등으로 인하여 일반 국민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가 없는 상황임.

남북대치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 등으로 인한 위협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도발 등에 의한 우리 국민의 피해를 정부가보상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적재난에 민방위사태 또는 적의 도발 및 위협으로 인한

피해를 추가함으로써 국민들이 입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 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나목). 법률 제 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0030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나목 중 "충돌 등으로"를 "충돌,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사태 또는 「통합방위법」에 따른 도발·위협 등으로"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아 법률 제20030호 재난 및 법률 제20030호 재난 및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3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 1. ------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 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 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현행과 같음) 가. (생략)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 나. -----폭발 · 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 ·화생방사고 · 환경오염사 고・다중운집인파사고 등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 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 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 축전염병예방법 | 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 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

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 먼지, 「우주개발 진흥 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 의 추락·<u>충돌 등으로</u> 인 한 피해

<u>충돌, 「민방위기</u>
본법」에 따른 민방위사태
또는 「통합방위법」에 따
른 도발・위협 등으로

2. ~ 13. (생략)

2. ~ 13. (현행과 같음)